

## 자료 열람 요구서

본 자료 열람 요구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8 조(자료의 기록 및 유지·관리 등)에 따라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므로 아래의 기재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○ 고객(금융소비자) 정보(신분증 사본 제출)

성명	계약자와 관계	생년월일	주소

### ○ 기재 사항

열람 목적	분쟁조정 신청 내역	* 분쟁조정 신청 일자 : 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* 분쟁조정 신청 내용 :
	소송 제기·응소 내역	* 소송 제기·응소 일자 :  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 * 소송 제기·응소 내용 :
열람 범위	열람 자료	
	열람 목적과의 관계	
열람 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열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본의 제공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취	

♣ 본인은 상기와 같이 기재하여 제공한 내용이 정확한 것임을 확인합니다.

-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8 조 제 4 항에 따라 회사가 열람을 요구받은 날부터 6 일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.
- 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 28 조 제 5 항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열람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20      년    월    일

성명 : (서명/인)

(법인의 경우)대리인 성명 : (서명/인)

친권자 / 후견인 성명 : (서명/인)